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5호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
기관의 장(교육장)
6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제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 ~ 4 (생략)</p> <p>5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<u>제43조</u>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</p> <p>6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<u>제41조</u>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</p> <p>7. (생략)</p>		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제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<u>제36조</u>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</p> <p>6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<u>제34조</u>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		

관 련 법 규 발 췌

▣ 지방자치법

제54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▣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감
2. 부지사, 부교육감
3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.국장, 담당관, 실.과장급
4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5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
6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
7.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공무원중 도분청 및 교육위원회의 실.과장 동일직급이상인자

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4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6조(하급교육집행기관의 설치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